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
------	-----

2022. 9. 2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9. 2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황보연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을 별표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명칭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률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함(안 별표).

나. 조례에 인용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함(안 제7조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조항과 별표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확장성을 높이고,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됨.

나. 중소기업지원시설 현황

- 기술기반 창업의 증가로 2020년 현재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전년 대비 5.4%(78,907개) 증가한 155만 3,371개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7%를 차지하는 규모임.

< 중소기업체 수 현황 >

(단위 : 개, %)

지역별		2018			2019			2020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전국	기업수	6,643,756	6,638,694	5,062	6,893,706	6,888,435	5,271	7,295,393	7,286,023	9,370
	비율(%)	100.0	99.9	0.1	100.0	99.9	0.1	100.0	99.9	0.1
서울	기업수	1,436,350	1,434,046	2,304	1,476,903	1,474,464	2,439	1,557,659	1,553,371	4,288
	비율(%)	100.0	99.8	0.2	100.0	99.8	0.2	100.0	99.7	0.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2022. 8.31.기준)

- 이처럼 높은 중소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창업·기술·인력·판로지원·지식재산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중소기업 조례”)를 제정(2000.7.)하고, 6개 중소기업지원 시설¹⁾(이하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 등을 별표로 규정함.
 - 지원시설은 중소기업 관련 ▶창업 및 육성, ▶연구·개발, ▶구매 촉진과 판로개척, ▶설명회·상담회 및 교육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함.
- 이후 도시형 제조업인 패션, 인쇄산업 등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인쇄센터(2002), 서울디자인센터와 서울무역전시장(2005), DMC첨단산업센터(2007.12.)를 순차적으로 지원 시설에 추가함.
- 반면에 서울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의 통합 운영을 위해 서울신기술창업센터로 통합되고, 잠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은 용도변경에 따라 삭제함(2005.4.).

1) 서울산업지원센터(종합지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창업보육),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전시판매장),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진시홍보), 서울애니메이션센터(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지원), 서울패션디자인센터(패션산업 육성 지원)

다.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 규정 삭제(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별표 삭제)

- 개정안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지원시설의 소재지 고시를 삭제함.

<삭제되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 (별표)>

명칭	기능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 창업지원
삭제(2005.04.14)	
삭제(2005.04.14)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중소기업제품의전시·판매 및 홍보 등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
서울패션디자인센터	패션산업 육성·지원
서울인쇄센터	인쇄산업 육성·지원
서울디자인센터	디자인관련 연구 및 개발 등
서울무역전시장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
DMC첨단산업센터	DMC단지 활성화 및 기업 지원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력 강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창업허브, 서울핀테크랩, G밸리 창업복지센터, 홍릉바이오 의료앵커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 반면에, 지원시설 기능이 통폐합되거나 변경·조정되기도 하고, 운영이 종료되면서 시설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신기술창업센터는 창업지원 업무가 종료돼 국제유통센터로 변경

(2021.2.)되었고, 서울패션디자인센터와 서울디자인센터는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통폐합(2013.1.) 등으로 현재 시설이 없으며, 창동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은 운영이 종료(2021.12.)됨.

- 이처럼 해당 지원시설이 확충되거나 폐쇄될 때마다 일일이 조례에 열거하는 것보다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임.
- 다만, 조례를 통해 지원시설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면서 조례의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원시설에 대한 별도의 고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한편, 지원시설의 폐쇄와 운영 종료 등으로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소재지를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행하지 않은 바, 지원시설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라. 인용 법률의 현행화(안 제7조제1항)

- 안 제7조제1항은 조례에 인용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 조항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함.
- 조례 인용 법률의 현행화는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법률적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임.
-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문을 이관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2021.7.)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바, 향후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일괄 삭제로 시민 이해와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 기능 및 소재지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수정함(안 제3조제3항).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5
----------	--------

제안년월일 : 2022년 9월 2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일괄 삭제로 시민 이해와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 기능 및 소재지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수정함(안 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생략)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u>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개정안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 지 고시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p>	<p>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신기술창업센터</u> 2. 삭 제 3. 삭 제 4. <u>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u> 5. <u>서울애니메이션센터</u> 6. <u>서울패션디자인센터</u> 7. <u>서울인쇄센터</u> 8. <u>서울디자인센터</u> 9. <u>서울무역전시장</u> 10. <u>DMC(Digital Media City)첨단 산업센터</u> <p>③ (생략)</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② (현행과 같음)</p>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차기연도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시책 및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별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

명칭	기능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 창업지원
삭제(2005.04.14)	
삭제(2005.04.14)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 및 홍보 등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
서울패션디자인센터	패션산업 육성·지원
서울인쇄센터	인쇄산업 육성·지원
서울디자인센터	디자인관련 연구 및 개발 등
서울무역전시장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
DMC첨단산업센터	DMC단지 활성화 및 기업 지원

제7조(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제>